



제 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908호)

2024.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격리기간 확보 등	3
2. 동물 소유자에 대한 걱정한 사육·관리의무 강화 등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12. 13.
3. 회 부 일 : 2023. 1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열거하면서, 특정 행위의 학대를 받아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동물 번식장에서 많은 동물들이 지속적인 영양결핍과 관리부재로 피부병, 전신 쇠약 등의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어, 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34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격리기간 확보 등(안 제34조제3항 등)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동물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치료·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의사의 진단 등을 거쳐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¹⁾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 ----- ----- ----- ----- ----- ----- -----

1) 시행규칙 개정('23.4.27.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피학대동물로 판단되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연장하였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생 략)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생 략)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제4항제2호·제4호</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5일 이상의 기간을</u> -----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서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격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정절차 등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소유자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도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보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학대 가해자에게 반환되어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²⁾.

2) “학대당한 동물 구조해 다시 가해자한테 넘겨...동물보호법 개선해야”, 조선비즈, 2022.08.30.

이에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최소 기간(5일 이상)³⁾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함으로써 피학대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 보호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더욱 엄격하게 격리해 치료·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법 개정('25.1.3. 시행)⁴⁾으로 구조된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수의사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 장 등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도록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개정('23.4.27. 시행)으로 보호조치 기간을 종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피학대 동물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격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법」 제34조제3항 개정 전·후 비교 >

- ▶ (개정 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4) 동물보호법 개정('25.1.3. 시행)으로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학대동물로 판단되는 동물을 보호조치할 때 격리기간을 5일 이상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된 동물보호법(법률 제19880호, '24.1.2. 개정, '25.1.3. 시행)이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에 실태 파악을 거쳐 추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동물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의무 강화 등(안 제9조 제1항 등)

현행법에서 소유자 또는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또는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소유자등에 대한 사육·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u>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⑤ (생략)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 ----- <u>동물의 운동·휴식</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u>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나 물 공</u>

⑤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12. (생 략) ⑥ (생 략)	<u>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또는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u>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0조제4항제4호를 위반한 소유자등</u> 2.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최근 동물을 굶겨 죽이거나 방치하는 등의 동물학대 사건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사육·관리 의무에 강제성 없이 선언적으로 규정⁶⁾하고 있어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사육·관리 책무를 구체화·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5) “굶겨 죽이고, 방치하고...잇따르는 반려동물 학대 사건”, 연합뉴스, 2023. 3. 7.

“화성 개 번식장에서 1천4백여 마리 구조···냉동실에 개 사체 보관”, mbc뉴스, 2023. 9. 3.

6)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동물⁷⁾과 소유자등⁸⁾의 적용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여 개정안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경우,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의 판단기준, 현실적인 단속 방법, 처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⁹⁾.

참고로, 현행법에서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¹⁰⁾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육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상해·질병·죽음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¹¹⁾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처벌¹²⁾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을

7)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파충류·양서류·어류 중 식용(食用) 목적은 제외)

8)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위배된다.(93헌바50, 1995. 9. 28.)

10)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11)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2)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수 있도록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사육·관리 책무를 강화하여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주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및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 1

동물의 적절한 사육 · 관리 방법 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 · 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갈증 ·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 · 부상 · 질병, 두려움 및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개별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의 조명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1) 돼지: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할 것 2) 육계: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할 것 나.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깔짚을 이용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驅蟲)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한다. 마. 돼지의 송곳니 발치 · 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참고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 관리 · 보호 의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2]

동물의 사육공간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마.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하되,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바.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동물의 위생 · 건강 관리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다.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라. <u>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u> 마.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사.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 ·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